

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(조은희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2012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8. 6.

발 의 자 : 조은희 · 이만희 · 김용태

주호영 · 이성권 · 서천호

신성범 · 박정하 · 김재섭

배준영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서울의 경우 900m마다 약국이 있는 반면, 전남 등 일부 광역지자체는 약국이 없는 무약촌의 비율이 30% 이상임. 이러한 무약촌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 수는 약 116만명으로 추정되고 있음.

무약촌 거주자들의 평균연령이 60.3세임을 감안할 때, 의약품에 대한 접근성 제고가 절실한 상황임. 그러나 지방 인구 감소로 인하여 약국의 영업이 곤란하고 수입 감소에 따라 약국 폐업 및 약사 이탈, 지방 약국 개설 기피 현상이 심화되는 실정임.

이에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인구감소지역에 공공버팀목약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, 약국 개설비용과 운영비용을 지원하도록 하여 무약촌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의 의약품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하려는 것임(안 제21조의4 신설 등).

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약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1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21조의4(공공버팀목약국의 지정 및 지원)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인구 감소지역(「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을 말한다) 주민의 의약품에 대한 접근성 제고를 위하여 해당 지역 내에 공공버팀목약국(이하 “공공버팀목약국”이라 한다)을 지정할 수 있다.
- ② 공공버팀목약국으로 지정받으려는 약국개설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.
- ③ 공공버팀목약국을 관리하는 약사 또는 한약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운영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.
- ④ 보건복지부장관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공공버팀목약국의 개설·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-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공공버팀목약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. 다만,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.

1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
 2. 보건복지부장관이 제4항에 따라 지원한 예산을 부당하게 집행하거나 목적과 다르게 사용한 경우
 3. 제8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
 4. 제69조의4제1호의3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
 5.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
-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경우 해당 공공버팀목약국에 지급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.
- ⑦ 제5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자는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시 공공버팀목약국으로 지정받을 수 없다.
- ⑧ 제1항에 따른 공공버팀목약국 지정의 기준·방법 및 절차, 제2항에 따른 신청 및 제5항에 따른 지정 취소의 방법·절차, 제6항에 따른 지원금의 환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
제69조의4에 제1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의3. 제21조의4제3항에 따른 운영시간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제77조제1호의2 및 제1호의3을 각각 제1호의3 및 제1호의4로 하고, 같은 조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의2. 제21조의4제5항에 따른 지정의 취소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<u>제21조의4(공공버팀목약국의 지</u> <u>정 및 지원) ① 보건복지부장</u> <u>관은 인구감소지역(「지방자치</u> <u>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</u> <u>특별법」에 따른 인구감소지역</u> <u>을 말한다) 주민의 의약품에</u> <u>대한 접근성 제고를 위하여 해</u> <u>당 지역 내에 공공버팀목약국</u> <u>(이하 “공공버팀목약국”이라 한</u> <u>다)을 지정할 수 있다.</u> <u>② 공공버팀목약국으로 지정받</u> <u>으려는 약국개설자는 보건복지</u> <u>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.</u> <u>③ 공공버팀목약국을 관리하는</u> <u>약사 또는 한약사는 보건복지</u> <u>부령으로 정하는 운영시간을</u> <u>준수하여야 한다.</u> <u>④ 보건복지부장관, 시·도지사</u> <u>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예산</u> <u>의 범위에서 공공버팀목약국의</u> <u>개설·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</u> <u>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</u> <u>다.</u>

⑤ 보건복지부장관은 공공버팀목약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. 다만,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.

1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

2. 보건복지부장관이 제4항에 따라 지원한 예산을 부당하게 집행하거나 목적과 다르게 사용한 경우

3. 제8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

4. 제69조의4제1호의3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

5.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

⑥ 보건복지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경우 해당 공공버팀목약국에 지급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.

⑦ 제5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자는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

제69조의4(시정명령) 보건복지부장관, 식품의약품안전처장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약국개설자,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, 수입자, 의약품 판매업자, 의약품 판촉영업자,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위반사항을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다.

1. (생략)

1의2. (생략)

<신 설>

1년 이내에 다시 공공버팀목약
국으로 지정받을 수 없다.

⑧ 제1항에 따른 공공버팀목약
국 지정의 기준·방법 및 절차,
제2항에 따른 신청 및 제5항에
따른 지정 취소의 방법·절차,
제6항에 따른 지원금의 환수
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
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
[illegible]

1. (현행과 같음)

1의2. (현행과 같음)

1의3. 제21조의4제3항에 따른
운영시간을 준수하지 아니한
경우

2. ~ 4. (생 략) 제77조(청문) 보건복지부장관, 식품의약품안전처장, 시·도지사,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. 1. (생 략) <u><신 설></u> <u>1의2. · 1의3.</u> (생 략) 2. · 3. (생 략)	2. ~ 4. (현행과 같음) 제77조(청문)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 1. (현행과 같음) <u>1의2. 제21조의4제5항에 따른</u> <u>지정의 취소</u> <u>1의3. · 1의4.</u> (현행 제1호의2 및 제1호의3과 같음) 2. · 3. (현행과 같음)
--	--